

2021년도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시: 2021. 1. 26.(화요일), 10:30
- 장 소: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
-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: 권현영(분과위원장), 박성호, 박정인, 홍지만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

2. 전차(제2021-7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

3. 안건상정 분과위원장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보고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
-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

시정권고 심의

4. 폐회선언 분과위원장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- 제1호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21건(안전번호 제2021-9532호~10048호)
 - 회의결과: 안전번호 제2021-9532호~9537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,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.

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71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.

안전번호 제2021-10048호(순번 517번)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안전번호 제2021-10047호(순번 516번)와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으로 부결함.

Ⅲ. 회의 의사록

1. 개회선언

- 권현영 분과위원장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
2. 전차(제2021-7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

- 권현영 분과위원장: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.
- E 위원: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.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.
- D 위원, B 위원, A 위원: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.
- 오진해 전문위원: 제2호 안건 회의록은 「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.
- 권현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,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.

3. 안건상정

○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오진해 전문위원: (심의안건의 저작물명,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)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, 저작권자,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.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'■■■■■■■', '□□□□□□', '◆◆◆◆', '◇◇◇◇◇◇◇◇◇◇', '●●●●●●●●●●', '▲▲▲', '△△△', '▶▶▶▶▶▶▶▶▶▶' 등 임.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.

- 참석 위원 전원: 해당 없음.

- 권현영 분과위원장: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.

- 오진해 전문위원: 금일 심의안건은 3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72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.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.

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1-9532호~9537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이며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본 만화 '○○○○○○○○', '★★★★★★', '▼▼▼▼'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.

- B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.
- D 위원: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를 복제·전송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.
- E 위원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- 권현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9532호~953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- 오진해 전문위원: (불법복제물 제공화면, 파일 다운로드 화면,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9538호~10047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, 음악, 게임, 출판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.
(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)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.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.
- (게임 ‘시티즈: 스카이라인’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9539호 게임 ‘시티즈: 스카이라인’은 웹하드에서 620포인트에 판매중이며,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.
- (영화 ‘조제’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9668호 영화 ‘조제’는 12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로, 웹하드에서 166포인트에 판매중이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.
- (영화 ‘마녀를 잡아라’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9774호 영화 ‘마녀를 잡아라’는 12월에 VOD 출시된 영화로 웹

하드에서 350포인트에 판매중이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.
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3건을 포함한 710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-9538호~1004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D, B, E 위원: (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)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9538호~1004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,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.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 안전번호 제2021-1004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,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2021-10047호와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사안임. 중복된 시정권고를 피하기 위하여 부결 의견임.
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, 심의대상 게시물,

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-1004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D, B, E 위원: (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) 안전번호 제2021-10047호와 동일한 게시물임을 확인하였고, 부결함.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10048호는 부결함.

(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안전번호 제2021-10048호는 부결하고 제2021-9532호~10047호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.”

4. 폐회 선언

-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.

2020년 제1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1. 1. 26.

분과위원장 권헌영

위원 박성호

위원 박정인

위원 홍지만